

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핵가족화 심화,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와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관련 법령 추가(안 제1조)
- 돌봄 및 돌봄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돌봄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정비(안 제4조~제9조)
 - 지원계획, 지원사업, 위탁 규정 신설, 서비스 제공기관 규정 정비
 -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신청, 지원중지, 환수조치 삭제
- 돌봄지원사업 시행 범위 신설(안 제10조)
-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지원, 위탁 조항 신설(안 제12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11조, 제19조, 제20조

- 「건강가정 기본법」 제22조, 제34조, 제35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 조항을 신설하고, 돌봄지원 사업 및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됨.